

3종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 계약서

106-86-30223

리카온화재해상
자동차손해사정(주) 최장흠

제1조 【계약의 목적】

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(이하 “보험회사”이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가동 19-40 남영빌딩 501호에
하 “손해사정업체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특수 피해물(전기비 통신설비 손해사정 능
작물, 기계류, 건설기계, 수입자동차, 자전거, 튜닝 및 이륜차량 등)에 대한 손해액
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2016년 5월 1 일부터 2016년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.

다만, 계약기간 중에 “보험회사”가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완료되지 못
하였을 경우에는 “손해사정업체”는 동 업무의 완료시까지 조속히 본 계약에 의한 업
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업무의 위임)

① “보험회사”은 그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
인정할 경우 “손해사정업체”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.

1.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액 사정업무 및 보험금 사정업무로서 보험업법 제188
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

- 1)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- 2)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- 3) 기타 ‘보험회사’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업무

② ‘손해사정업체’는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금액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없다.

제4조(업무의 수입)

“손해사정업체”은 “보험회사”로 부터 업무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
자 등과 협조하여 수입된 업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
한다.

제5조(손해사정업무 진행사항 중간보고)

“손해사정업체”는 “보험회사”로 부터 수입 받은 업무 중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미
평가보험 계약물건에 대하여는 손해조사 후 손해품목, 수량 등 주요 조사내용을 자체
조사 양식 의거 의뢰 후 2일 이내에 ‘보험회사’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.

제6조(손해사정 보고서 제출)

① “손해사정업체”은 “보험회사”로 부터 손해액 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보
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
조사하고 업무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내에 손해사정보고서를 “보험회사”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- 1)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- 2)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- 3) 기타 '보험회사'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업무

② “손해사정업체”은 전항의 보고서에 조사한 각 조사인과 제3종 손해사정사 및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)

① “보험회사”은 “손해사정업체”가 수임업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“손해사정 기본 보수표”(별첨#1)에 의거 수수료를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내 지급한다.

②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단, 10일 이내에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를 서면(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포함)으로 통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은 업무량, 위임한 업무내용, 업무범위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.

제8조(기밀의 유지)

① ‘보험회사’와 “손해사정업체”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, 기술상 비밀은 물론 고객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이다.

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인정보 보호)

① “손해사정업체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“보험회사”의 고객의 개인정보(이하 “고객정보”라 한다)를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,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정보를 사용(제3자에게 양도, 위탁, 누설 등 포함)할 수 없다.

단, 본 계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“보험회사”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“손해사정위임업체”는 고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,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“손해사정위임업체”의 고객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정책(화면 인쇄 및 복사기능 차단, 이동식 저장

장치 사용금지 등)이 포함되어 있다.

④ “손해사정위임업체”는 자신의 임직원(피용인, 사용인 등 호칭을 불문하고 “손해사정위임업체”의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), 대리인 및 위탁받은 자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상기 임직원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.

⑤ “손해사정업체”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일체의 고객정보를 즉시 반환 또는 폐기 및 “손해사정업체”의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.

⑥ “손해사정업체”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고객정보 유출, 침해 등의 고객정보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“보험회사”에 통지하고 “보험회사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⑦ “보험회사”는 “손해사정업체”의 고객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“손해사정업체”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, “손해사정업체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“보험회사”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⑧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.

⑨ “손해사정업체”는 “보험회사”나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(전산 파일 포함)에 대해 손해사정보고서 제출시 파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.

제10조(위임업무 양도금지)

“손해사정업체”는 계약에 따른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“보험회사”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(계약의 해지)

① “보험회사”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손해사정업체”가 이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“손해사정업체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3. “손해사정업체”가 그 업을 중지하거나 양도하였을 때
4. “보험회사”의 판단으로 “손해사정업체”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5. “손해사정업체”이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
6. “손해사정업체”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으로 압류집행 또는 경매신청을 당한 경우

7. “보험회사”,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분쟁, 분규, 시위(1인 시위 포함)의 발생, 소송제기 및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
8. “보험회사”와 “손해사정업체”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
9. ‘손해사정업체’가 ‘보험회사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존물을 처분 함으로써 “보험회사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

②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2조 【손해배상】

- ① ‘보험회사’와 ‘손해사정업체’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해태하거나, 지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‘손해배상업체’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보증금(500만원 이상의 현금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)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 【분쟁의 해결】

-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본 계약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해당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‘보험회사’와 ‘손해사정업체’는 위 계약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 년 4 월 27 일

‘보험회사’

‘손해사정업체’

상호: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상호: 106-86-30223

주소: 서울 강남구 역삼대로 382

주소: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(주) 최장흠

대표이사 김 용 범 (印)

대표: 울퉁불퉁 동산구 동자동 19-40 남영빌딩 5층 (印)

서 비 스 손 해 사 정

<별첨1> 손해사정 기본 보수표

구분	손해사정액	요율	기준액(원)	비고
기본보수표	1천만원 미만	기본료	660,000원	1)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. 2)손해액이 소액(백만원)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	2천만원 미만	5.06	1,012,000원	
	3천만원 미만	4.18	1,254,000원	
	5천만원 미만	3.74	1,870,000원	
	1억원 미만	2.88	2,882,000원	
	1억원 이상	2.20	4,400,000원	
외산이륜차 /자전거	최저수임료		80,000원	위장사고 적발 및 손해절감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조정하여 협의 할 수 있다.
	200만원 미만		120,000원	
	300만원 미만		180,000원	
	500만원 미만		250,000원	
	1천만원 미만		350,000원	
	2천만원 미만			
	3천만원 미만		450,000원	
3천만원 이상				
여비/교통비 기준	대중교통		실비	KTX, 항공(제주), 버스 등
	승용차		유류대, 통행료	
	숙박비		40,000원	1일당
	일비		30,000원	식대(예비비 포함)

주1) 손해액 절감, 위장사고 적발 및 기타 특수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다.